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389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2년 수입·지출 계획이 변경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변경내역 : 총1개 세부사업, 29억 4,400만원 증액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 세부사업	조정내역		
	당 초(A)	변 경(B)	증 감(B-A)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일반예산(재무활동)	3,755	6,699	2,944
예치금	3,755	6,699	2,944

나.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9,262	22,206	2,944
전 입 금	9,200	9,20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7,740	7,740	0
예 치 금 수	2,280	5,224	2,944
이 자 수 입	41	41	0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9,262	22,206	2,944
융 자 성 사 업 비	15,500	15,500	0
기본경비	7	7	0
예 치 금	3,755	6,699	2,94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 동 운용계획 변경안은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29억 4,4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29억 4,400만원)에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29억 4,400만원)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재원을 예치하여 여유재원으로 지출 계획 하고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표 3-1〉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변경(안)	증 감
예 치 금 수 회	2,280	5,224	2,944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변경(안)	증 감
예 치 금	3,755	6,699	2,94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수입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지출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의 당초 지출계획보다 78.4%, 29억 4,4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2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여유재원을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중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과 조성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미 금번 제315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1일 시작되었음에도 11월 17일에 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회의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결과를 미리 단정하여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미리 반영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금번 정례회중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기금운용부서가 의회의 의결결과를 예단하여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결과를 미리 반영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결과 잉여자금 예치 총액이 당초 지출계획보다 증가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어 동 안건의 내용과 같이 예치금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은 이미 지난 6월, 결산심사 당시부터 예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시점이 되어서야 '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그 외에도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기금은 운용계획 변경안을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으로 기재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①**인적자원 역량강화**, ②**행정운영경비**, ③**재무활동**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바
- 기금의 지출계획중 정책사업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